

# 기 술 정 보



월간 기술정보지 통권 제46호 (2015년 5호)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발행



「산청소방서 건립공사」 조감도

## 목 차

### ■ 건설관련 소식 ..... 1

- 경남도 서부부지사 서부청사 시대 연다
- 경남개발공사 창원시간 운동부지 토지분할 합의
- 공동주택 품질검수 눈에 띄네
-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도민과 함께 합니다
- 개별공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국비 확보
- 경남도내 우수주택 전시회 개최
- 국비지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양산·남해·하동에 건립
- 산업단지 4곳 추가공급, 고용 창출 극대화
- 합천삼가양전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화
- 산청한방향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화
-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승인 고시로 본격화

### ■ 지식정보 ..... 10

- 전문건설기업도 10억까지 복합공사 원도급 가능 토록 입법예고
- 아파트 대피공간 열차단 성능 30분 이상 돼야
-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이 앞장선다
-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50% 넘었다
- 건축물 안전제도 국민체감형으로 개선
- 도시계획 규제완화 후속조치 추진
- 제13회 건설신기술의 날 개최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3.1상승

### ■ 최신법령 및 법령해석 ..... 21

### ■ 신기술 정보 ..... 26

### ■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현황 ..... 29

### ■ 기술인 나눔 정보 ..... 31

### 경남도 서부부지사, 서부청사 시대 연다

#### ▶ 서부청사 관련 조례 도의회 통과, 서부 대개발 탄력

경남도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서부대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부청사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의회는 4월 21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서부청사와 관련된 2개의 조례(안),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과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을 원안으로 가결하였다. 조례안은 경남도로 이송되어 오는 4월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부부지사의 소관 업무도 기존의 정무적 업무를 포함하여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도본청 실국(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업무와 서부대개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서부부지사가 관장하게 될 행정기구와 정원은 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등 본청 3개국 220명(본청 정원의 17%)과 4개 사업소 190명(사업소 정원의 44%)이며,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정원 대비 20%에 해당된다.

본청 3개 실국을 서부부지사가 관장하는 것은 이들 조직이 기능적으로 서부경남의 산업과 행정 여건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실국으로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서부부지사’라 하여 서부지역만을 관장하는 지역적 의미의 부지사가 아니라 ‘서부대개발’을 통해 경남식 지역균형발전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와 경상남도의 정책적 의지를 담은 명칭이다.

제·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서부부지사 명칭과 조정된 소관사무의 시행시기는 2015년 4월 30일 조례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되며, 서부청사의 위치과 인재개발원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재지 변경은 2016년 1월 1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서부청사 관련 조례 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서부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고, 서부부지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서부 대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서부청사 건립을 위한 리모델링 실시설계가 완료 단계에 와 있으며, 올 6월 서부청사 기공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6년에는 본격적인 서부청사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격적인 서부 대개발을 위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추진, 지리산 케이블카산지관광특구 도입, 한방향노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항공국가산업단지 등 서부권 핵심전략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 자료 : 도 서부청사추진단 서부청사팀당  
(055)211-6453

## 경남개발공사-창원시간 웅동부지 토지 분할 합의

- ▶ 투자자 리스크 해소,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 성공토대 구축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대상 사업지인 웅동지구(68만평)의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토지분할에 합의했다고 4월29일 밝혔다. 이는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이 합의하고,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경남도에 따르면,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주요 예정지인 웅동지구(68만평)가 경남개발공사(64%)와 창원시(36%)의 공동소유로 되어있고, 또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부지 우선 매수청구권 관련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투자자들은 토지분할 및 투자협상창구 단일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한편, 이번 합의에서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간의 토지분할과 더불어, 창원시의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처분 마무리, 경남개발공사로의 투자협상창구 단일화 등도 포함되어 투자유치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이번 조치를 발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유치활동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규일 경상남도 경제통상본부장은 “토지 분할과 협상창구 단일화 등은 투자자의 리스크를 제거해 주는 선결과제라고 설명하면서,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복합리조트 공모’에 진해가 선정될 수 있도록 RFC 제출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투자유치단 글로벌테마파크담당  
(055)211-3112

## 공동주택 품질검수 눈에 띄네!

- ▶ 올해 18개 아파트 단지 14,271세대 품질검수 실시
- ▶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 사전 차단 효과 기대

경남도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에서 올해 18개 아파트 단지 14,271세대를 대상으로 품질검수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자를 대신해서 건축, 전기, 조경, 기계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이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 및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에 대해 조언함으로써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격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 2011년도에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2014년말 까지 47개 아파트 단지 27,505세대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시하여 총 1,233건 품질을 개선하였다.

올해 3월말까지 진주시 1곳, 거제시 2곳 등 3개 단지 2,231세대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시하였다.

경남도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므로 검수를 원하는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가 위치한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이준용 건축과장은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공동주택 입주 후 하자관련 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하자관련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하고 품격있는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세심하게 품질검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료 : 도 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055)211-4435



##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도민과 함께 합니다

▶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관리 투명성 강화 기대

경남도는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해 ‘공동주택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도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간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1일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관리에 대한 감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대상을 ‘주택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감독 대상 업무와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이 동의하여 감사를 요청하거나, 관할 시장·군수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경우 직접 도에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경남도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 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고, 감사 종결 시 소명절차를 거쳐 행정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하여 감사 및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 조례 제정으로 입주자 등이 직접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감시를 강화하고 입주민 스스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도를 높여 투명한 주거문화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055)211-4434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 2015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남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열람은 시군구별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가격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청 개별공시지가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통해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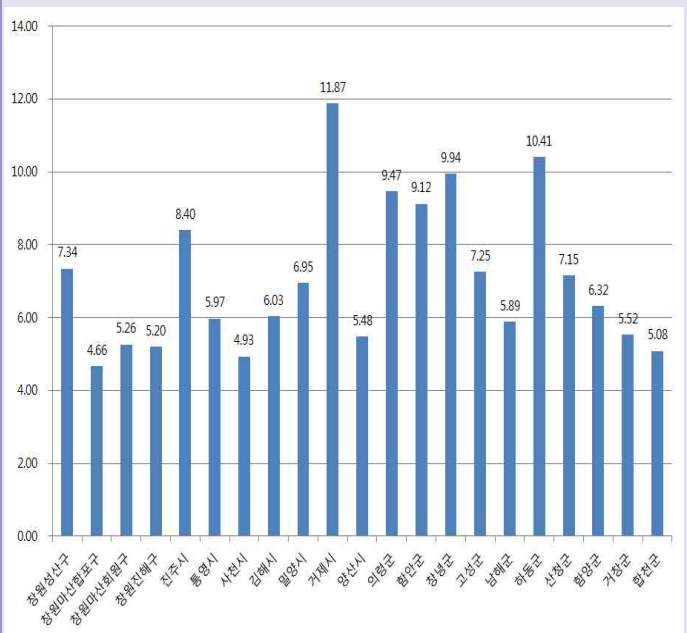
제출된 의견제출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군구청 개별공시지가 담당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7.05% 상승하였으며, 시군별로는 거제시(11.87%), 하동군(10.41%), 창녕군(9.94%) 순으로 도내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합천군(5.08%), 사천시(4.93%), 창원시 마산합포구(4.66%)가 가장 낮았다.

\* 참고자료 첨부(2015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시군별 상승률)



■ 자료 : 도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055)211-4573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국비 확보

▶ 창원, 진주, 양산 3개 지역, 국비 4년간  
107억 원 지원

경남도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에 도시 3개 지역(창원시, 진주시, 양산시)이 선정되어 4년간 국비 107억 원을 지원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는 도시 지역과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도로·상하수도·안전방재시설 등 인프라 정비와 지붕개량·창호정비 등 집수리, 주민공동주거 개량·주민역량강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확정된 도 지역은 ▲ 창원시 완월지구 ▲ 진주시 옥봉지구 ▲ 양산시 소남지구 3개 지구로 도시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심 인근지역이나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슬럼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노후불량주택이 다수 분포하는 등 주민생활환경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한 지역이다.

이들 3곳의 생활여건 개선에 4년간 국비 107억 원이 지원된다.

이 중 ▲ 창원시 완월지구 20억 원 ▲ 진주시 옥봉지구 52.5억 원 ▲ 양산시 소남지구 34.2억 원이며, 추가적으로 지방비는 도비 10%, 시비 20%를 포함해 30% 이상이 투입되어 실제 총 사업비는 약 150억 원이 될 전망이다.

■ 자료 : 도 한방향노회산업과 행복생활권담당  
(055)211-6533

## 경남도내 우수주택 총집합 전시회 보러 오세요

▶ 4월부터 우수주택 시군 순회 전시 실시

경남도는 2014년도 도내 각 시군에서 완공된 단독주택 중 우수주택으로 선정된 40동의 건축물에 대해 오는 4월 6일부터 창녕군을 시작으로 8월 21일까지 시군 순회 전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친환경적인 건축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시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매년 40동씩 '경상남도 우수주택'을 선정하여 우수주택 순회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시책의 성과 홍보의 장이며 최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원주택에 대한 정보제공의 기회도 될 전망이다.



도는 선정된 우수주택을 판넬로 제작하여, 시군청 로비, 민원실 등 도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하고, 의병제전, 한방약초 축제 등 지역축제행사와도 연계 전시하여 도민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순회전시 판넬에는 우수주택 사진, 도면, 설계자, 건축비 등을 상세히 공개하여 새로운 주택 건축에 관심이 많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경상남도 우수주택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www.gsnd.net](http://www.gsnd.net))-도시교통국-우수주택에도 게재되어 있으며, 도 홈페이지에는 2009년 우수주택부터 올해 우수주택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시·군	전시 일정
창녕군	2015. 4. 6. ~ 4. 10.
함안군	2015. 4. 13. ~ 4. 17.
의령군	2015. 4. 20. ~ 4. 24.
김해시	2015. 4. 27. ~ 5. 1.
산청군	2015. 5. 2. ~ 5. 8.
함양군	2015. 5. 11. ~ 5. 15.
거창군	2015. 5. 18. ~ 5. 22.
합천군	2015. 5. 26. ~ 5. 29.
진주시	2015. 6. 1. ~ 6. 5.
사천시	2015. 6. 8. ~ 6. 12.

시·군	전시 일정
하동군	2015. 6. 15. ~ 6. 19.
남해군	2015. 6. 22. ~ 6. 26.
고성군	2015. 6. 29. ~ 7. 3.
통영시	2015. 7. 6. ~ 7. 10.
거제시	2015. 7. 13. ~ 7. 17.
창원시	2015. 7. 20. ~ 7. 24.
창원시	2015. 7. 27. ~ 7. 31.
창원시	2015. 8. 3. ~ 8. 7.
밀양시	2015. 8. 10. ~ 8. 14.
양산시	2015. 8. 17. ~ 8. 21.

■ 자료 : 도 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055)211-4425

## 국비지원 친환경에너지타운 하동·남해·양산에 건립된다

- ▶ 산업부 공모사업에 하동(영신원마을), 남해(환경기초시설) 선정
- ▶ 환경부 공모사업에 양산(화제마을) 선정

경남도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부 공모에 하동군, 남해군이 환경부 공모에 양산시가 각각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 공모에는 전국 6개 사업이 신청하여 하동군, 남해군이 선정되었으며, 환경부 공모에는 전국 14개 사업이 신청하여 양산시가 최종 확정되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소각장·가축분뇨 처리장 등 기피시설, 요양시설·변전소 등 비선호 시설, 방파제·매립지 등 유휴시설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을 가미하여 낭비 현상을 극복하고 주민 수익 향상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양산시 원동면 화제마을 가축분뇨 처리시설, 하동군 적량면 영신원마을 유휴시설, 남해군 남해읍 환경기초시설내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자원 에너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주민수익 등을 창출해 나가는 사업으로

양산시 원동면 화제마을은 2017년까지 52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폐열을 활용하여 찜질방, 족욕장 등을 운영하게 된다.

하동군 적량면 영신원마을은 2016년까지 126억 원을 투입하여 폐축사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2.7MW) 주민수익을 창출하고 주거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며, 양로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과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등도 조성된다.

남해는 2017년까지 227억 원을 투입하여 환경기초시설 내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폐자원 가스화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소각시설 폐열을 이용하여 식물공장, 도서관, 찜질방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앞으로 중앙부처, 시군과 사업비, 사업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일 경남도 경제통상본부장은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기계융합산업과 신재생에너지담당 (055)211-2783



## 산업단지 4곳 추가 공급, 고용창출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 2015년 38지구(1,003만㎡) 산업단지 신규 공급, 전국 최다

경남도는 제조업 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단초가 되는 산업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 올해 새로이 4개 단지 135만7천㎡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공급한다.

당초 올해 34개 산업단지(867만5천㎡)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추가로 4개 산업단지(135만7천㎡)를 더 공급한다.

시군	단지명	산업단지 면적(천㎡)
계	4개소	1,357
창원시	상복	116
사천시	대진	255
김해시	삼계	804
함안군	그린테크밸리	182

추가로 공급하는 4개 산업단지는 입지여건, 입주수요, 자원조달계획,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등의 심사를 강화해 국토교통부와 경남도가 조정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를 거쳐, 공영개발방식 또는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100% 실제 입주하는 실수요 민간개발방식의 산업단지이다.

올해 경남도에 신규로 공급되는 산업단지는 전국 110개 신규 공급 대상의 35%에 해당하는 38개 지구로 전국 최다이다.

경남도의 산업단지 수요가 많은 것은 도로·항만·철도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항공산업·나노융합·해양플랜트 국가산단 3곳 확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 부산·울산에 소재한 기업들의 이전 수요와 경남 내 기업들의 확장수요가 반영된 것이다.

경남에서 산업 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은, 1월말 현재 97.5%(전국 평균 92.3%)의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에서 알 수 있다.

■ 자료 : 도 도시계획과 산업단지계획담당 (055)211-4343



## 합천 삼가 양전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화

### ▶ 22일 합천군·경남개발공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수탁 협약체결

경남도와 합천군에서 경남 미래 50년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가 양전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경남도는 합천군과 경남개발공사가 22일 오후 5시 합천군청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대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산단조성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일원에 330만㎡(100만 평) 규모로 조성될 삼가 양전지구 산업단지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시기에 맞추어 2020년까지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일원에 1,860억 원을 투입하여 금속·기계,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제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 친환경 제품 제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단지가 완료되면 연간 48,044억 원의 직접생산효과 및 8,984억 원의 직접소득효과가 예상되며 11,967명의 직접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 대행 위·수탁협약 체결에 앞서 지난 4일에는 주형 및 금형제조업체 (주)동구기업(대표이사 류병현)에서 2020년까지 33,000㎡ 부지에 130억 원을 투자기로 협약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해 경남도와 합천군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자료 : 도 서부권전략사업과 전략사업담당 (055)211-6444

## 산청한방향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

### ▶ 산업단지 시행 협약체결로 행정계획 연내 마무리

경남도는 산청군, 경남개발공사와 산청한방향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한방향노화산업단지 조성을 본격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산청한방향노화산업단지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자연환경과 기후, 토양 등이 좋아 국내 최고 약초 서식지인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지마리 일대에 17만여㎡ 규모에 244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된다.

그동안 도는 산청 한방약초산업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해 향노화 제품 생산업체를 방문해서 6개 기업체에 370억 원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지현철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장은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향노화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 향노화 관련 우수 제약 및 향노화 관련 업종 유치를 통해 전통의 약의 산업화를 추진, 경남 서북부 지역을 한방향노화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청한방향노화산업단지가 완성되면 향노화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등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한방향노화산업의 메카로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도 한방향노화산업과 백두대간권담당 (055)211-6523

##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승인 고시로 본격화

### ▶ 2023년까지 총 21개 사업 8,500여억원 투입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이 산업부의 확정 승인 고시로 탄력을 받아 본격 추진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승인 신청한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이 산업부에서 16일 최종 확정 승인 고시되어 노후화된 창원산단이 지식기반기계산업의 허브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부의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승인 고시는 창원산단이 2013년 11월 구조고도화 확산단지로 선정되고 지난해 3월 혁신대상단지로 선정된 후 시행계획 수립용역과 관련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되었으며 고시된 사업은 향후 국비 확보에 우선권을 갖게 된다.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2023년까지 21개 사업에 총 8,529억 원(국비 3,473, 지방비 1,541, 산단공 등 민자 3,515)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내용은 공간조성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부지를 중심으로 고청정 합금소재 생산 기반 지원센터 구축 등 ICT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과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물류부지에 웰빙 복합센터 등 첨단산업 집적단지가 조성된다. 혁신역량 사업으로는 산학융합지구 등 7개 사업이, 환경개선 사업은 근로자복지타운 건립사업 등 12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에 고시된 사업은 총 21개 사업 중 올해 또는 내년에 시행되는 8개 사업 중심으로 승인 고시 되었으며 필요시 매년 변경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구조고도화사업은 1974년 국가산단으로 지정 된 창원산단이 지난 40년간 지역 및 국가산업발전을 이끌어 왔으나 생산설비의 노후화, 연구개발 투자 부진, 고급 연구인력 확보 애로 등으로 현재는 중저위 기술 위주로 퇴화되어 혁신 산단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에는 경남도와 창원시는 물론 도내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사업별 추진 주체를 정해 책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난 2월 참여 기관 간 MOU를 체결하고 법인설립 추진 중에 있는 산학융합지구 사업은 경남도,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경상대를 비롯한 도내 3개 대학 등 9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21개 구조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창원산단의 생산액이 현재 56조원에서 150조 원으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현재 10만 4천 명에서 13만 명으로 늘어 날 것으로 예측된다.

■ 자료 : 도 국가산단추진단 국가산단추진팀당  
(055)211-2716

## 전문건설기업도 10억까지 복합공사 원도급 가능토록 입법예고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복합공사 :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서 전문건설기업이 원도급이 가능한 공사

○ 이번 입법예고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의 하나로 그간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및 발주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것이다.

□ 현재 종합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를 원도급하고, 전문업체는 등록된 업종에 따라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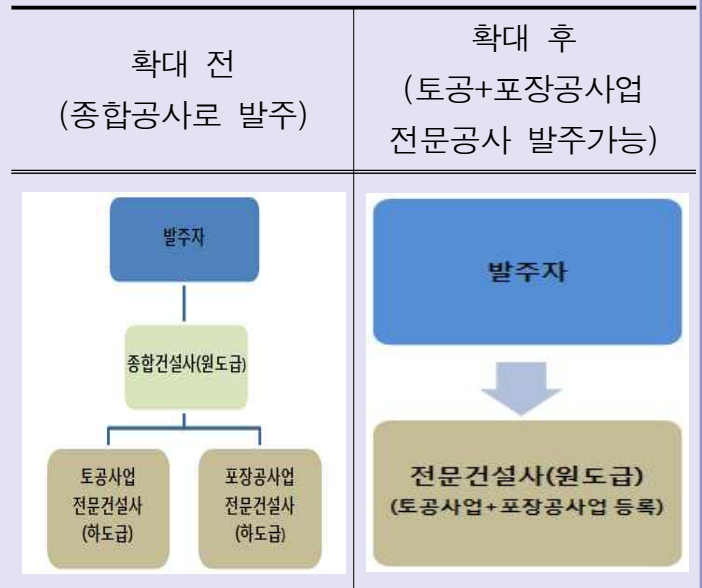
○ 전문업체의 경우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예외적으로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해 허용중이었으나 이번에 10억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문건설기업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 및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시공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지금까지 건설산업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및 업역 분쟁이 지속되어왔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칸막이식 경직적 업역 규제를 유연화 하는 방향 하에 이번에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04

## 아파트 대피 공간 열차단 성능 30분 이상 돼야

▶ 방화문 성능 기준 높여 안전 강화...계단 너비 기준도 명시

□ 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차열(遮熱)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건축허가 시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 감소를 위하여 건축물 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한다.

\*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외기에 접하고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2㎡(인접세대와 공동설치 시 3㎡)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4월 6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이나,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②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 현재,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cm, 120cm, 150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 다만, 방화문 성능 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민간 업계에서 차열성능을 갖춘 방화문의 생산 기술 및 설비를 갖추어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후인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공간 확보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계단 등의 너비 측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5

##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이 앞장선다

▶ 201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선정...33곳에 18억원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서귀포 의료원 등 33개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 성능이 낮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모범사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 '13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 690만동에 이르는 기존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 올해 시범사업은 시공지원사업 부문에 서귀포 의료원 등 5개소와 사업기획지원사업 부문에 태백 석탄박물관 등 28개소를 선정하여 총 18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 시공지원사업은 일반리모델링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공사비를 지원한다.

○ 이번에 선정된 서귀포의료원 구관건물은 당초 철거를 계획하였으나, 산부인과 시설이 부족한 서귀포 지역의 산모들을 위해 그린리모델링을 통하여 분만시설 및 산후조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또한 광주시립청소년직업센터는 1929년 광주 학생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하여 전국적인 모금운동에 의해 건립된 건물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에서 직업체험센터로 거듭나게 된다.

○ 사업기획지원사업은 리모델링을 구상 중인 공공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건물 현황평가\*(그린클리닉)와 설계 컨설팅\*\*(그린코치)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그린 클리닉, Green CLINIC) 전문가 그룹의 현장 점검 및 면담을 통해 건물 성능·거주 환경에 대한 맞춤형 현황 평가 수행

\*\* (그린 코치, Green COACH) 노후건물에 대한 설계컨설팅 수행

□ 시범사업 시행자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에너지평가,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대상은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총 91건이 접수되었으며,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의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 학계·산업계·관계공공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6인)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신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의 모범 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지정 대상

○ 시공지원사업 (총 9.5억원 이내 지원)

사업대상	연면적
서귀포 의료원	3,623㎡
광주 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5,25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동	8,415㎡
전남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932㎡
국회의사당	81,443㎡

○ 사업기획지원사업 (총 8.5억원 이내 지원)

사업대상	연면적
태백석탄 박물관	6,876㎡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동 주민센터	256㎡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청사	1,953㎡
흑석체육센터	2,895㎡
시흥시청사	21,463㎡
한국폴리텍대학 달성캠퍼스 기숙사	5,050㎡
충주시청사	42,190㎡
인천항 여객터미널	6,482㎡
충북대 제2학생회관	2,966㎡
구립관악 청소년회관	4,941㎡
창원대 경영대학	9,957㎡
정부대전청사	240,950㎡
태백시청사	6,932㎡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18,540㎡
서영여고 본관동	4,386㎡

■ 자료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753

## 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50% 넘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세라믹기술원  
개청...11개 기관 중 6곳 이전 완료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이원복)과 한국세라믹기술원(원장 김민)은 4. 13.(월) 13시와 14시에 경남 진주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재경 국회의원, 박대출 국회의원,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이창희 진주시장, 양복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 이전추진단 지원국장,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진주 신사옥은 지열 냉난방,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이며, 자연채광, 옥상 녹화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요소를 적용하여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건축되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진주 신사옥은 지하1층·지상6층 규모(부지면적 13,500㎡, 건축연면적 13,935㎡)로 2013년 8월에 착공하여 2015년 1월 준공하였으며, 2015년 3월에 이전을 마무리 하고 260명의 직원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진주 신사옥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부지면적 20,500㎡, 건축연면적 25,134㎡)로 2013년 7월에 착공하여 2015년 1월 준공하였으며, 2015년 3월부터 250명의 직원이 이전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

□ 기술혁신 성과물에 대한 시험평가·품질인증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세라믹 분야 종합 연구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이전을 계기로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경상남도가 조성 중인 3대 국가산업단지 즉,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산업 단지를 비롯하여 경상남도 와 진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기술혁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우주항공 등 경남지역 전략산업의 핵심소재인 세라믹섬유 시험생산 위한 시험공장(Pilot Plant\*) 구축('12~'16년 240억원), 지역 산·학·연 지원 위한 HR-XRD(고분해능 X-선 회절분석기) 등 첨단 장비 확충('14~'19년 209억원) 등을 통해 진주가 국내 세라믹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은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경상대 및 경남과기대, 진주보건대 등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이전 공공기관들과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 내 사회단체들과의 결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세라믹기술원도 경상대 등 지역대학과의 학·연 과정 운영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창업보육센터(14실) 운영을 통한 세라믹 관련 창업 활성화, 취약계층 대상 도자체험교실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경남진주 혁신도시는 4.077km<sup>2</sup> 면적에 총 11개 기관 3,580명이 이전 하며, 정주계획인구 3만 8,153명을 목표로 2016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 이전완료기관: 중앙관세분석소('13. 2.), 한국남동발전('14. 3.), 국방기술품질원('14. 5.) 중소기업진흥공단('14. 7.), 한국산업기술시험원('15.3), 한국세라믹기술원('15.3)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 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며, 혁신도시를 자족형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작년 8월에는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교육청, 이전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정주여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대중교통 지속적 확충, 상세한 교통정보 제공, 원거리 등교 통학대책 마련, 상가 등 편의시설 조기 착공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등

### < 경남 진주 혁신도시 추진현황 >

□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소문리 일원
- 면적/계획인구 : 407.7만m<sup>2</sup> / 38,153인
- 주택공급 : 13,626호  
(공동 10,667호, 단독 1,492호, 복합 1,467호)

□ 조감도



■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044)201-4495

## 건축물 안전제도,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 ▶ 초고층, 특수구조, 소규모 건축물 등 맞춤형 안전제도 마련
- ▶ 부실 시공자, 설계자 처벌 강화되고, 유지관리 소홀 건축주도 처벌
- ▶ 준법 관행 정착을 위해 연중 불시 현장점검 본격 시행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 운영

□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은 2층 이하 소규모건축물에도 적용된다. 또한,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된다.

○ 건축관계자의 처벌도 강화되어, 부실 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시공자 업무수주를 즉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가 도입되고, 경제적 제재수준도 1천만 원 수준에서 3억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또는 철근 등을 사용 또는 공급하다가 국토교통부의 불시 점검에 적발될 수 있고, 이 경우 재시공뿐 아니라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현행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보다는 정부, 지자체 등의 운영 측면을 중시한 결과, 대형 건축물 안전에 집중하고 소규모 건축물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은 소홀하여 부실공사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실제로 1천여 명이 있었던 마우나리조트(1,205㎡)는 다중이용건축물(5천㎡ 이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판교 환기구는 구체적인 안전기준(높이, 재질 등)이 없었으며, 의정부 화재사고는 불연재 외벽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모두 건축법상 주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 허가관청은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시공자와 감리자에 공사 감독을 일임하고 있어 불법을 해도 단속되거나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 국토통부가 추진 중인 건축물 안전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환기구 추락사고, 의정부화재사고 등 사고 발생 직후 발표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 중이다.

○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재발방지 대책중 8개 대책중 습설하중 반영 등 7개 대책이 완료되었고, 기초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지역별 적설량 기준은 금년중 마련될 예정이다.

○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환기구 등 건축물의 부속물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환기구를 지면에서 2m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15.4.2~4.22)에 있다.

- 법령 개정 전에 신축 건축물 환기구의 설계·시공과 기존 건축물 환기구의 유지관리에 적용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추락방지 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환풍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14.11)하였다.

○ 의정부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불연성 외벽마감재로 사용 대상 건축물 범위를 30층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도 현재 규제 심사 중에 있다.

- 전국 약 235,000호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② 둘째, 개별 사고 발생후 대책과 별개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18일 발표한 “건축물안전종합대책”의 25개 세부대책도 입법중에 있다

○ One·Two Strike-Out 제도, 안전영향평가제도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4분기에 국회에 제출예정이며, 다중이용건축물 범위 확대 등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금년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 건축관계자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 연구용역이 필요한 3개 과제를 제외한 22개 과제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 협의중에 있다.

③ 셋째, 건축공사현장을 연중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 지난해 5월부터 금년 3월까지 50개 샌드위치패널 현장과, 202개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설계가 적절한 지를 모니터링 하였다.

○ 전국 202개 공사현장의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119개 현장에 대해시정조치를 하였다.

○ 금년에는 점검현장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점검분야를 단열재, 철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④ 넷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일반국민을 위한 건축물 안전사고시 비상대응요령을 배포하고, 초등학생을 위해 사고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관리 방법, 건물 이상징후 발견 및 사고시 대피요령도 만화로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대책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건축물 안전 포럼”을 구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안전취약분야를 발굴·개선하고, 해외 모범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안전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안전기술 발전을 위해 안전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국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은 건축물 소유자의 적절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물 소유자도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 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는 PEB, 환기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것을 지시 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민간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금년 5월까지 가시적인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고발조치할 것을 일선 허가권자에게 지시하였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044)201-4082

## 도시계획 규제완화 후속조치 추진

### ▶ 기숙사 건폐율 완화 및 토지거래허가제 간소화

□ 앞으로 도심 내 건설되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등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취득 시 토지거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도시부분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년 업무계획 및 주요대책(경제정책방향, 투자활성화대책 등) 과제 이행 등을 통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5.1.6 공포, 7.7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4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5.4.14.~'15.5.26.)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건폐율 등 건축제한 완화

○ 용도지역 내 용적률은 건축물 종류에 관계없이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로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15년 경제정책방향)

○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舊 「도시계획법」으로 조성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에 한정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제안)

#### ②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는 4년 동안 해당 용도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거주 주택용지,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의 용도로 거래한 경우에도 축산업·임업·어업 용지와 동일하게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였다.

○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할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해당지역에 거주하여야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하나,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외지인의 농업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2년간 허가받은 대로 사용할 의무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③ 가스공급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

○ 현재는 가스배관망 설치 시 도시가스사업자와 달리, 자가소비형 직수입자\*는 가스공급시설(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의 용도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형 직수입자간에 동일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가소비형 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 여러 지자체를 경유하여 설치하는 가스배관망 특성상 각각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투자 지연도 우려

④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15년 업무계획)

○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은 법령에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변경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계획의 유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또는 건축선 변경 등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하였다.

○ 또한,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일괄 변경신고 처리 사항\*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가 필요 없도록 규정하였다.

\* 동수나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이하인 경우,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이 높이 1m이하 또는 전체 높이의 1/10이하인 경우 등

⑤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절차 간소화 (법률 위임 사항)

○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하여야 하나,

-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5년 이내) 등은 별도의 평가 및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토지적성평가: 개별 토지 특성을 종합 평가하여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 판단

\* 재해취약성 분석: 재해를 고려한 도시방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별 재해(폭우, 폭염, 강풍 등) 취약도를 체계적으로 분석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건축주,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사업 절차 등도 단축되어 투자촉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 제13회 건설신기술의 날, 유공자 20명 표창

### ▶ 신기술 발전 위해 공사 활용 기회 확대... 해외진출 적극 지원

□ 「제13회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행사가 4월 29일(水) 정경훈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비롯한 200여 명의 신기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엘타워(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매리골드홀에서 개최되었다.

□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개발자,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산하기관, 설계업체 관계자 등 총 20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 정경훈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 산업의 발전과 기술개발에 노력해 온 신기술 관계자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첨단 기술의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새로 개발되어 활용이 되지 않은 기술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첫 번째 고객 되어주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신기술 협약업체를 양성화하여 기술을 전수 받은 업체에도 발주청과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의 공사 활용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특허와 신기술의 심사를 연계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해외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특허청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수 기술을 선정하여 금년 6월중 해외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며, 신기술의 해외진출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신기술 제도 개요>

○ (지정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개량한 기술로서 신규성·진보성·현장 적용성이 인정된 기술

○ (지정혜택)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혜택 부여

- 제3자 활용시 개발자에게 기술사용료 지급(건기법)

- 시공성, 경제성 등에서 우수할 경우 설계반영 의무화(건기법)

- 경쟁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 등 가능(국가계약법)

- 공사, 용역 PQ 심사 시 가점, 적정 하도급을 보장(계약예규 등)

○ (시행효과\*) 건설공사의 신기술 공종 공기단축 45% 향상, 공사비 절감액 4,977억원(신기술공사비의 8.2%, 예산투자 대비 120배)

○ (유사제도) 건설신기술(최초 도입)을 벤치마킹하여 타부처에도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절차, 인센티브 등 제도운영은 유사

○ (지정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개량한 기술로서 신규성·진보성·현장 적용성이 인정된 기술

○ (지정혜택)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혜택 부여

- 제3자 활용시 개발자에게 기술사용료 지급(건기법)

- 시공성, 경제성 등에서 우수할 경우 설계반영 의무화(건기법)

- 경쟁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 등 가능(국가계약법)

- 공사, 용역 PQ 심사 시 가점, 적정 하도급을 보장(계약예규 등)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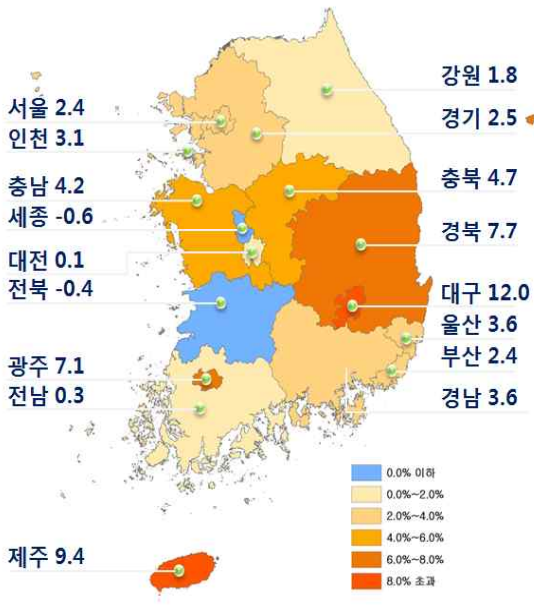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 전년대비 3.1% 상승

- ▶ 신기술 발전 위해 공사 활용 기회 확대... 해외진출 적극 지원

#### 전국 3.1% 상승 ('14년 0.4% 상승)

수도권 2.5% 광역시 5.1% 시·군 3.6%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전국 공동주택\* 1,162만 호의 '15년도 가격을 4월 30일에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 또한, 같은 날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 공동주택(1,162만 호) : 아파트(933만 호)·연립(47만 호)·다세대주택(182만 호)

\*\*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30일에 공시한 표준 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산정·공시

- '15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1% 상승하여, 전년도 0.4%에 비해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14년도 부동산 시장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 부동산정책,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 이번 공동주택 가격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전반에서 공시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수도권 2.5% 상승, 광역시 5.1% 상승, 시·군 지역 3.6% 상승, 가격수준별로는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주택 3.3% 상승,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2.9% 상승,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 초과 50㎡ 이하 주택 3.4% 상승, 102㎡ 초과 135㎡ 이하 주택 2.3% 상승하여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 전년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2.5%, 광역시(인천 제외)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3.6%로 나타났다.

○ 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저금리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일부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개발사업추진 등으로 수도권 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변동률은 대구(12.0%), 제주(9.4%), 경북(7.7%), 광주(7.1%), 충북(4.7%), 충남(4.2%) 울산(3.6%) 등 15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세종(-0.6%), 전북(-0.4%) 2개 시도는 하락하였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 등의 폐지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1. 제정사유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평가와 관련한 3건의 지침을 통합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를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 가.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4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5호)' 및 '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77호)'을 통합하고 제명을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으로 변경
- 나. 설계용역과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위원회를 일원화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용역평가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안 제4조)
- 다.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키 위해 용역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 실시(안 제5조)
- 라. 발주청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가중치 적용비율의 편차 완화(안 제9~10조)
- 마. 용역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을 신인도와 기술능력 항목으로 재구성하고, 용역평가의 비중을 강화(안 제24조)
- 바. 용역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협회로 하여금 해당 업체의 용역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6~27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농업 6차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진입도로 폭 확보기준을 완화하고, 조례와 지침이 서로 다를 때 적용하는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농업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로기준 완화

- 농업·어업·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업·어업·임업 관련 소규모 가공·유통·판매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적정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규모별 도로 폭 확보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 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적용 기준의 명확화

-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법령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 정한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 조례를 따르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화

#### 다.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공작물 설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의 명확화 등

##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수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장기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비율에 행복주택건설용지를 반영(지침 안 2-8-5-3.(3) ⑧)

-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건설용지를 장기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15% 이상)에 포함하도록 함

나. 환지에정지조서 및 환지처분조서의 서식(주민등록번호) 개선(지침 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 환지에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시 작성하는 환지에정지지정조서와 환지처분조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함

다.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감리 규정 정비(지침 안 7-2-1, 7-2-2, 7-2-3)

- 감리전문회사 → 건설기술용역업자, 감리원 → 건설기술자 등 개정내용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의 감리업무 관련 용어 수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5.1.6 공포, 7.7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와 투자확대를 위해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및 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 수립 시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사항 검토(안 제10조, 제16조, 제19조, 제42조의2, 제4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의 하나로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문화재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토지적성평가 실시 등의 제외 대상(안 제16조의2, 제21조제2항·제3항)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된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등을 규정하여 기초조사에 따른 지자체 및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안 제25조제4항)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건축선 등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조례로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여 여건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라.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안 제52조제1항)  
「건축법」에 따른 일괄 변경신고 처리 대상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고, 현재 경미한 변경 사항 중 사업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으로 명확화하게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마. 일단의 공업용지 내 공장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5항)  
산업단지와 연접해 있고,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사업으로 조성된 단지 내의 공장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가 충분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폐율을 80퍼센트까지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에 설립된 기존 공장의 증개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바. 학교 기숙사 용적률 완화(안 제85조제3항)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중 학교부지 외에서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조례로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의무 기간 완화(안 제124조제2항)

자기거주용 주택용지, 복지·편익시설 용지의 용도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 해당 용도별로 3년 또는 4년간 사용할 의무가 발생하나, 용도별 사용 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 기준 중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추가(안 제6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이외에도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추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절차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나. 토지거래허가기준 중 해당지역 거주기간 완화(안 제23조제1호)

토지거래허가 기준 중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한 경우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삭제하여 귀농·귀촌 가구의 토지취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접합부에 횡방향 연결재를 설치하고 횡방향으로 긴장한 바닥판 일체식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현대건설(주)
	브릿지테크놀러지(주)
	(주)케이알티씨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지정번호 : 제 763 호
- 명 칭 : 접합부에 횡방향 연결재를 설치하고 횡방향으로 긴장한 바닥판 일체식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
- 기술분야 :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바닥판 일체식 중공형의 PSC 박스거더를 병렬로 밀착하여 거치한 후 박스거더 사이의 횡방향 연결구간에 경사각을 갖는 강관연결재(Easy-bar) 및 철근 이음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일정간격으로 배치된 횡방향 강연선을 긴장하여 상부거더를 일체화시키는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로서, 저형고 및 급속시공이 가능하고 편측 캔틸레버를 갖는 외측거더를 적용함으로써 캔틸레버 길이 변화로 곡선교의 곡률반경 적용이 가능하며 횡방향 인접 교량의 시공 시 횡방향 긴장을 위한 작업공간 확보가 가능한 기술이다.

### ○ 신기술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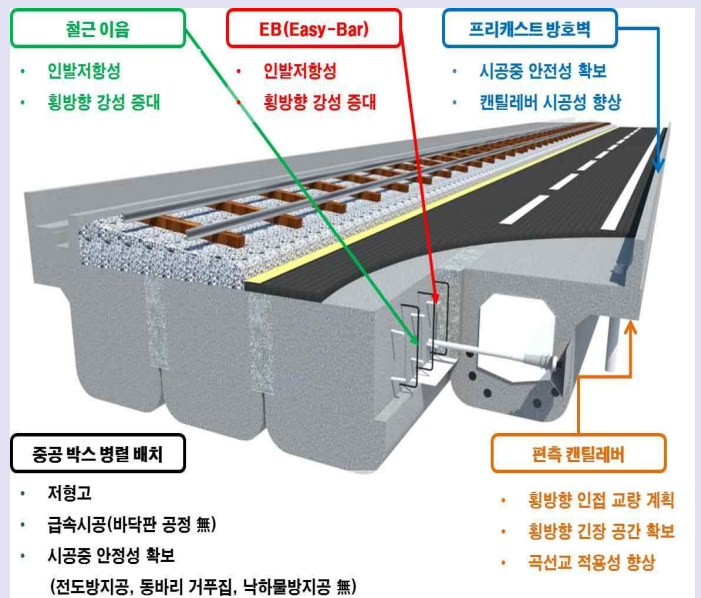
외측 거더에 편측 캔틸레버를 포함하여 미리 제작된 바닥판 일체식 중공형 PSC 박스거더를 병렬로 배치하고 횡방향 연결재(경사 강관연결재, 철근 이음) 및 횡방향 긴장을 통하여 일체화시키는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

###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 4. 신기술품셈

-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거더의 철근조립(내측, 외측) → EPS 블록 설치 → 거더의 거푸집조립(내측, 외측) → 콘크리트 타설 → 증기양생 및 거푸집 해체 → 거더긴장 및 그라우팅 → 거더 가설 → 횡방향 연결재 설치 및 연결부 콘크리트 타설 → 횡방향 긴장



[ 신기술의 구성 상세 ]

※ 신기술내용 열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건설신기술 정보마당에서 확인가능

# “분절된 바닥판과 그라운드 앵커의 다단계 긴장을 이용한 스트레스 리본 교량(DSRibbon교) 공법”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디에스글로벌이엔씨
-------	--------------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 762 호
- 명 칭 : 분절된 바닥판과 그라운드 앵커의 다단계 긴장을 이용한 스트레스 리본 교량(DSRibbon교) 공법
- 기술분야 :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스트레스 리본 교량의 시공에 있어서 분절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을 이미 시공된 현수형태의 1차 케이블에 설치하고 바닥판과 바닥판 사이 이음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2차 케이블 긴장 전에 이음부 접합 케이블을 이용하여 분절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끼리 소정의 압축력을 도입함으로써 이음부와 콘크리트 부재 사이의 경계면에서의 불연속성을 최소화하면서 일체 구조화시켜 축방향 강성손실을 방지하고, 시공단계별로 그라운드앵커의 긴장력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다양한 지반조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리본 교량 공법이다.

### ○ 신기술의 범위

분절된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이음부 접합 케이블로 직접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시공단계에 따라 그라운드 앵커의 다단계 긴장을 이용한 스트레스 리본 교량 공법

##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 4. 신기술품셈

-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① 그라운드앵커 설치 및 1차 긴장	② 1차 케이블 설치 및 긴장	③ 프리캐스트바닥판 제작 및 설치
		
④ 이음부 콘크리트 타설	⑤ 이음부 접합케이블 설치 및 긴장	⑥ 접속부 콘크리트 타설
		
⑦ 그라운드앵커 2차 긴장	⑧ 2차 케이블 설치 및 긴장	⑨ 시공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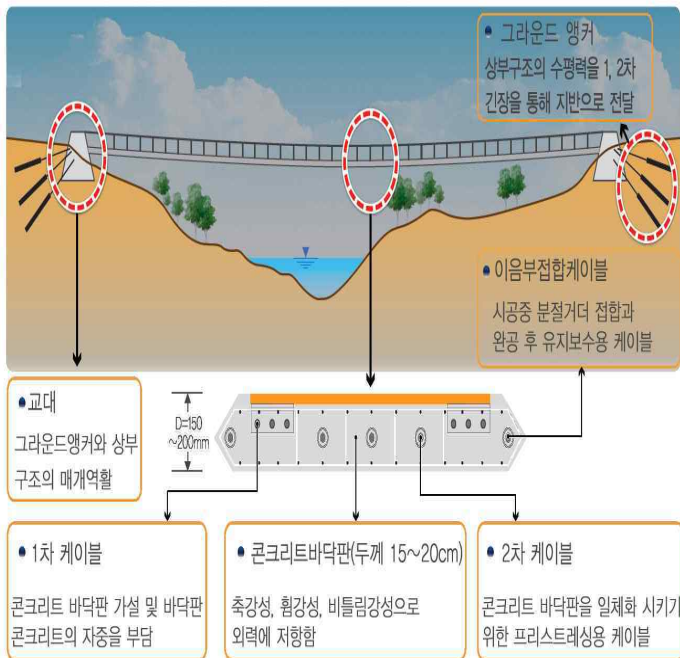
### 3. 프리캐스트 바닥판 설치

중량(t/개)	배치인원(인)		크레인 (50ton/ hr)	가설중량 (t)
	특별인부	보통인부		
3.578	3.51	2.63	3.52	30

- [주] ① 본 품은 프리캐스트 바닥판 30ton 설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② 크레인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본 품은 가설현장까지 반입된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양중 및 설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4. 이음부 콘크리트 타설/6.접속부 콘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토목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참조



<신기술 개념도>

※ 신기술내용 열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건설신기술 정보마당에서 확인가능

## 2015년 제3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실시설계 적정성 3건,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1건
- 심의일자 : 2015. 4. 24(금)

의안번호	발주청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심의의결)
2015-03-01	창녕군 (상하수도사업소)	창녕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실시설계) 사업개요 : 우오수관로 신설 L=50.0km, 개량 L=4.5km, 293억 원	조건부 채 택
2015-03-02	창녕군 (상하수도사업소)	창녕 영산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실시설계) 사업개요 : 우오수관로 신설 L=34.1km, 개량 L=4.4km, 217억 원	조건부 채 택
2015-03-03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	밀양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실시설계) 사업개요 : 하천정비 L=7.62km, 280억 원	조건부 채 택
2015-03-04	창원시 (시민안전과)	창원 마산서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용역비 : 28억 원)	조건부 채 택

## 2015년 제4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심의일자 : 2015. 05. 15.(금)
- 실시설계 적정성 심의 1건

의안 번호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2015- 04-01	산청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일원</li> <li>· 사업내용 : 도로개량 L=934m, B=9.0m (피암터널 700m, 비탈면안전공 4,562㎡)</li> <li>· 사 업 비 : 275억 원</li> <li>· 사업기간 : 2015 ~ 2018년(3년)</li> </ul>	산청군 (건설과)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를담당  
(055)211-4626

## 계약심사 현황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5년 4월	계		82	94,893	88,713	6,180	6.51%
	공사	토목	29	66,113	61,812	4,301	6.51%
		건축	7	12,168	11,434	734	6.03%
		기타	10	7,063	6,667	396	5.61%
	용역		11	7,406	6,713	693	9.36%
	물품		25	2,143	2,087	56	2.61%

■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548

## 나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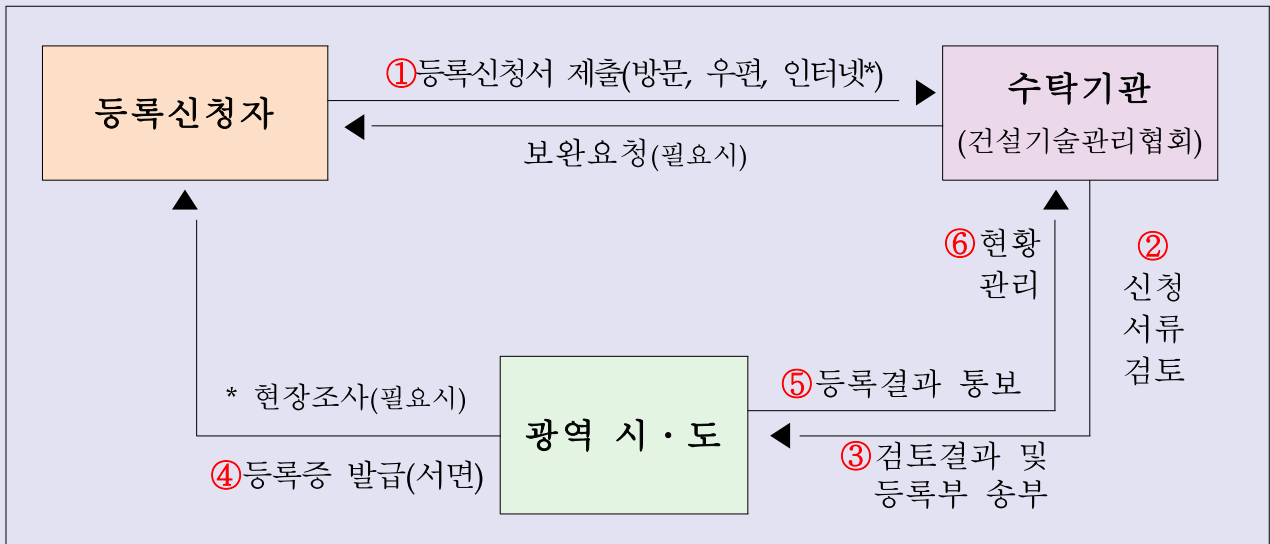
### 2015년 국가기술자자격 검정시행일정

회별	회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제출)	실기(면 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기술사	제105회	1.9 ~ 1.16	2.1	3.27	3.30 ~ 4.8	4.25 ~ 5.4	5.22
					3.30 ~ 4.2		
	제106회	4.10 ~ 4.16	5.10	6.19	6.22 ~ 7.1	7.25 ~ 8.3	8.21
					6.22 ~ 6.25		
	제107회	7.3 ~ 7.9	8.1	9.18	9.21 ~ 10.02	10.17 ~ 10.26	11.13
					9.21 ~ 10.26		
기사 (산업기사)	제1회	1.30 ~ 2.5	3.8	3.20	3.23 ~ 4.1	4.18 ~ 5.1	5.8
	제2회	4.24 ~ 4.30	5.31	6.12	6.15 ~ 6.24	7.11 ~ 7.24	7.31
	제3회	7.24 ~ 7.30	8.16	8.28	8.31 ~ 9.9	10.3 ~ 10.16	10.23
	제4회	8.21 ~ 8.27	9.19	10.8	10.12 ~ 10.21	11.7 ~ 11.20	12.18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안내

- 2014. 5. 23.자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등의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이와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민원의 접수·확인 및 관리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 현행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1년 이내(2015. 5. 22.까지) 변경 등록하여야 함.



- <① 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신청인)
- <② 단계> : 신청서 접수, 고유 관리번호 부여, 서류 검토(관리협회)
- <③ 단계> : 등록서류 검토결과 통보(관리협회→해당 시·도)
- <④ 단계> : 등록증 발급(해당 시·도→신청인)
- <⑤ 단계> : 등록결과 통보(해당 시·도→관리협회)
- <⑥ 단계> : 등록결과 접수, 용역업자 등록번호 등재·관리(관리협회)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ccs0673@korea.kr](mailto:ccs0673@korea.kr)(담당자 최춘수)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